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해사감독법

주체86(1997)년 9월 24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97호로 채택  
주체88(1999)년 1월 21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72호로 수정  
주체93(2004)년 6월 2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507호로 수정보충  
주체95(2006)년 10월 31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041호로 수정보충  
주체100(2011)년 12월 21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052호로 수정보충  
주체102(2013)년 7월 2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292호로 수정보충

## 제1장 해사감독법의 기본

### 제1조(해사감독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해사감독법은 해사감독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해상에서 사람의 생명과 배의 안전을 보장하며 배에 의한 환경오염을 막는데 이바지한다.

### 제2조(해사감독사업의 강화원칙)

해사감독사업을 강화하는것은 국가의 일관한 정책이다.  
국가는 해사감독부문에 대한 투자를 계통적으로 늘이며 그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하는데 큰 힘을 넣는다.

### 제3조(해사감독기관의 설치원칙)

해사감독기관은 국가의 해사감독정책을 집행하는 기관이다.  
국가는 감독대상이 집중되어있고 감독사업이 편리한 지역에 해사감독기관을 설치하도록 한다.

### 제4조(해사감독체계의 수립원칙)

국가는 해사감독체계를 바로 세우고 해사감독사업을 통일적으로 장악지도하도록 한다.

### 제5조(해사감독의 과학성, 객관성, 신속성 보장원칙)

국가는 해사감독에서 과학성, 객관성, 신속성을 보장하도록 한다.

### 제6조(해사감독일군의 자격)

해사감독은 해당 자격을 가진 자만이 한다.  
국가는 해사감독일군대렬을 튼튼히 꾸리고 그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이도록 한다.

### 제7조(해사분야의 교류와 협조)

국가는 해사분야에서 다른 나라,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

### 제8조(국제해사협약의 효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승인한 해사분야의 국제협약은 이 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 제2장 배의 등록

### 제9조(배등록의 기본요구)

배를 등록하는것은 배에 대한 장악과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선결조건이다.

해사감독기관은 배등록부에 배를 정확히 등록하여야 한다.

### 제10조(배이름, 선적항, 호출부호, 번호의 제정)

배의 이름과 선적항은 배임자기관, 기업소, 단체가 정한다. 이 경우 해사감독기관의 합의를 받는다.

배의 호출부호와 해상이동봉사식별번호는 전파감독기관이 정한다.

### 제11조(배등록의 신청)

배임자기관, 기업소, 단체는 선적항을 정하고 해사감독기관에 배등록신청서를 내야 한다.

매매 또는 양도와 관련한 배등록신청서에는 공증문건을 첨부하여야 한다.

### 제12조(등록내용과 등록증서발급)

해사감독기관은 등록할 배의 이름과 선적항, 배임자기관의 이름, 영업주소, 등록번호, 호출부호, 국제해사기구번호, 해상이동봉사식별번호, 기술제원, 배의 매매, 양도, 저당관계 같은것을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배에는 등록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제13조(배등록증서의 재발급)

배운영기관, 기업소, 단체는 배등록증서를 분실하였거나 오손시킨 경우 해당 해사감독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해사감독기관은 신고내용을 검토하고 배등록증서를 재발급하여 주어야 한다.

#### 제14조(등록한 배의 표식)

등록한 배의 지정된 위치에는 배이름, 선적항을 표식한다. 이 경우 다른 나라로 항해하는 배에는 국제해사기구번호를 함께 표식한다.

#### 제15조(공화국 국적취득의 신청)

공화국국적을 취득하려는 다른 나라 배는 해사감독기관에 국적취득신청서를 내야 한다.

국적취득신청서에는 배이름, 선적항, 국적 같은것을 밝혀야 한다.

#### 제16조(배등록의 삭제)

다른 나라에 판매되었거나 침몰, 화재, 파손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거나 5개월이상 행방불명된 배와 폐선시킨 배는 등록에서 삭제한다.

### 제3장 선원의 등록과 배기술자격심사

#### 제17조(선원등록과 자격심사의 기본요구)

선원의 등록과 배기술자격심사를 정확히 하는것은 선원을 꾸리고 그의 기술기능수준을 높이는데서 나서는 중요요구이다.

해사감독기관은 선원의 등록과 배기술자격심사를 엄격히 하여야 한다.

#### 제18조(선원의 등록조건)

선원등록은 배치되었거나 채용한 선원에 대하여 한다.

해사감독기관은 선원등록부와 배기술자격등록부, 등록카드에 선원을 정확히 등록 하여야 한다.

#### 제19조(선원등록의 방법과 기한)

해사감독기관은 선원을 지휘선원과 일반선원으로 갈라 등록하여야 한다.

선원은 5년에 한번씩 재등록하여야 한다.

#### 제20조(배기술자격의 심사)

지휘선원과 배길안내사는 해사감독기관의 배기술자격심사를 받아야 한다.

일반선원도 신청에 따라 배기술자격심사를 받을수 있다.

배기술자격은 5년에 한번씩 재심사한다.

#### 제21조(선원증, 배기술자격증, 배기술자격보증서의 발급)

해사감독기관은 등록 또는 재등록하였거나 배기술자격심사에서 합격

한 선원에게 선원증 또는 배기술자격증, 배기술자격보증서를 발급하여 주어야 한다.

우리 나라 배에 타는 다른 나라 선원에게는 해당 나라의 배기술자격증을 인정하는 보증서 또는 우리 나라의 배기술자격증을 발급하여 줄수 있다.

#### 제22조(선원증의 효력)

선원증은 배의 선원임을 확인하는 증서이다.

다른 나라로 항해하는 배의 선원에게 발급한 선원증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령권을 대신한다.

#### 제23조(선원증과 배기술자격증의 역할)

선원증이 없이는 배를 탈수 없으며 배기술자격증이 없이는 선장, 부선장, 기관장, 부기관장, 항해사, 기관사, 전기사, 무선통신사, 배길안내사의 직무를 수행할수 없다.

#### 제24조(배의 최소안전정원증서의 발급)

해사감독기관은 배의 크기와 구조, 기관의 수량, 출력, 기술장비, 항해거리 같은것을 타산하여 배의 최소안전정원수를 정하고 최소안전정원증서를 발급하여 주어야 한다.

우리 나라 수역에서 항해하는 배의 최소안전정원수는 운항증서에 밝혀 주어야 한다.

#### 제25조(선원훈련증서의 발급)

해사감독기관은 선원양성소 또는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은 선원에게 선원훈련증서를 발급하여 주어야 한다.

### 제4장 해난사고의 조사처리

#### 제26조(해난사고조사처리의 기본요구)

해난사고의 조사처리는 해사감독기관의 중요임무이다.

해사감독기관은 정해진 기준과 객관적증거에 기초하여 해난사고를 조사처리하여야 한다.

#### 제27조(해난사고의 종류)

해난사고에는 배의 침몰, 침수, 충돌, 좌초, 좌주, 파손, 고장, 화재와 인명피해 같은것이 속한다.

배에 의한 바다, 강, 호수의 오염도 해난사고로 인정한다.

### 제28조(해난사고의 처리관할)

해사감독기관은 우리 나라 령해, 경제수역, 강, 호수에서 일어난 해난사고를 조사처리한다.

다른 나라 수역과 공해에서 해난사고를 일으킨 우리 나라 배에 대하여서도 조사처리한다.

### 제29조(해난사고의 통보)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해난사고를 발견하면 즉시 해사감독기관에 알려야 한다.

해난사고에 대하여 통지 받은 해사감독기관은 제때에 조사처리하여야 한다.

### 제30조(해난사고보고서의 작성)

해난사고를 일으킨 배의 선장 또는 배운영기관, 기업소, 단체는 해사감독기관에 해난사고보고서를 내야 한다. 이 경우 등록문건과 각종 증서, 배기술문건, 해도, 항해일지, 기관일지, 기름작업기록부, 배운영일지 같은것을 함께 내야 한다.

다른 나라 배가 우리 나라 령해 또는 경제수역에서 해난사고를 일으켰을 경우에는 배대리기관이 해난사고보고서를 내야 한다.

### 제31조(해난사고의 감정)

해사감독기관은 해난사고를 정확히 조사확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설비를 분해하거나 부분품을 떼어내거나 대상물을 촬영, 측정, 분석하는 방법으로 감정할수 있다.

### 제32조(해난사고를 일으킨 배의 통제)

해난사고를 일으킨 배는 사고조사가 끝나기전에 항해할수 없다.

해난사고를 일으킨 배의 선장 또는 배운영기관, 기업소, 단체는 사고현장을 보존하고 책임있는 자를 류동시키지 말아야 한다.

### 제33조(심의처리에 대한 의견의 제기)

해난사고의 심의처리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그것을 결정한 날부터 15일안으로 재판기관에 의견을 제기할수 있다.

### 제34조(조사가 끝난 배의 항해안전성검사)

해사감독기관은 해난사고에 대한 조사가 끝난 배의 항해안전성을 검

사할수 있다.

배운영기관, 기업소, 단체의 요구에 따라 해난사고의 조사처리문건과 해난증명서를 발급하여 줄수 있다.

## 제5장 배설계의 심의

### 제35조(배설계심의의 기본요구)

배설계의 심의를 바로하는것은 배와 설비, 의장품의 질을 보장하는 데서 나서는 기본 담보이다.

해사감독기관은 배설계심을 제때에 책임적으로 하여야 한다.

### 제36조(의무적인 배설계심의)

배를 건조, 개조, 수리하거나 설비, 의장품을 만들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해사 감독기관의 설계심을 받아야 한다.

설계심을 받지 않고는 배를 건조, 개조, 수리하거나 설비, 의장품을 생산할수 없다.

### 제37조(배설계심의의 신청)

배설계를 심의 받으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배설계심의신청서와 설계문건을 해사감독기관에 내야 한다.

다른 나라 배를 수리하려 할 경우에는 배대리기관이 배설계심의신청서와 설계문건을 낸다.

### 제38조(배설계의 심의방법)

해사감독기관은 배설계에서 항해감당력과 구조, 재료, 설비, 의장품, 경제적효과성 같은것이 보장되었는가를 정확히 검토하고 승인하여야 한다.

다른 나라 배설계의 심의는 두 나라의 해사법규와 국제협약에 근거하여 한다.

### 제39조(배설계유효기간의 설정)

해사감독기관은 배설계를 심의하고 유효기간을 정하여 주어야 한다. 유효기간이 지난 배설계는 리용할수 없다.

### 제40조(배설계의 재심의)

심의 받은 배설계를 고친 경우에는 해사감독기관의 배설계심을 다시 받는다.

배설계의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설계심을 다시 받는다.

#### 제41조(발명, 창의고안, 프로그램의 도입)

배에 발명이나 창의고안, 프로그램 같은것을 새로 도입하려 할 경우에는 해사감독기관의 합의를 받는다.

#### 제42조(배설계의 내용표기)

수출하는 배와 다른 나라로 항해하는 배설계의 내용표기는 조선어와 영어로 한다.

### 제6장 배검사

#### 제43조(배검사의 기본요구)

배검사를 정확히 하는것은 배의 항해감당력을 보장하고 수명을 늘이기 위한 중요 담보이다.

해사감독기관은 배의 건조, 개조, 수리정형과 설비, 의장품을 갖춘정형을 엄격히 검사하여야 한다.

#### 제44조(배검사의 구분)

배검사는 제조검사와 운항검사로 나누어 한다.

제조검사는 건조하는 배, 운항검사는 운영하는 배에 대하여 한다.

#### 제45조(배검사의 신청)

배의 검사를 받으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배검사신청서를 해사감독기관에 내야 한다.

다른 나라 배가 해사감독기관의 운항검사를 받으려 할 경우에는 배대리기관이 검사신청서를 낸다.

#### 제46조(제조검사)

배의 제조검사는 건조검사와 예비검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설비와 의장품에 대한 예비검사는 생산현장에서 직접 하거나 해당 품질감독기관에 의뢰하여 할수 있다.

#### 제47조(운항검사)

배의 운항검사는 초기검사, 년차검사, 중간검사, 갱신검사의 방법으로 한다.

필요에 따라서 추가검사, 임시운항검사, 선저외판검사 같은것을 조직할수 있다.

#### 제48조(공정검사)

해사감독기관은 건조, 개조, 수리하는 배에 대하여 공정별로 검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관, 기업소, 단체가 자체로 진행한 공정검사를 검토하는 방법으로 할수도 있다.

#### 제49조(최종검사)

건조, 개조, 수리한 배에 대한 최종검사는 계류시운전검사와 항해시운전검사로 나누어 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건조, 개조, 수리한 배의 시운전지도를 작성하여 해사감독기관에 내야 한다.

#### 제50조(다른 나라에서 배의 운항검사)

공화국령역밖에서 항해하고있는 검사유효기간이 지난 배의 운항검사는 공화국해사 대표기관이 한다.

공화국해사대표기관이 없을 경우에는 해사감독기관이 직접 하거나 다른 나라 배검사 기관에 의뢰하여 할수 있다.

#### 제51조(검사증서의 발급)

해사감독기관은 제조 또는 운항검사에서 합격된 배에 운항증서, 협약증서, 선급증서를 발급하거나 해당 증서에 검사유효기간을 확인하여 주어야 한다.

다른 나라 해사기관의 의뢰에 따라 진행한 다른 나라 배에는 해당증서를 발급하여 줄수 있다.

#### 제52조(보험검사)

해사감독기관은 보험기관의 신청에 따라 배보험검사 혹은 상태평가 감정을 하고 조서를 발급하여 줄수 있다.

### 제7장 배와 배운영기관, 항시설의 안전검열

#### 제53조(안전검열의 기본요구)

배와 배운영기관, 항시설에 대한 안전검열은 배의 안전을 보장하며 사람의 생명과 해양생태환경, 재산의 피해를 막기 위한 중요조건이다.

해사감독기관은 안전관리와 안전보장조치정형을 검열하여야 한다.

#### 제54조(안전관리검열의 종류)

안전관리검열은 잠정증서발급을 위한 검열과 완전증서발급을 위한 검열로 나누어 한다.

잠정증서발급을 위한 검열은 운영을 시작하는 배 또는 배운영기관,



기업소, 단체에, 안전증서발급을 위한 검열은 이미 증서를 받고 운영하는 배 또는 배운영기관, 기업소, 단체에 대하여 한다.

#### 제55조(안전관리검열의 신청)

안전관리검열을 받으려는 배운영기관, 기업소, 단체는 해사감독기관에 검열신청서를 내야 한다.

검열신청서를 배운영기관, 기업소, 단체에 대한 검열신청과 배에 대한 검열신청으로 나누어 내야 한다.

#### 제56조(안전관리증서의 발급)

검열신청을 받은 해사감독기관은 배와 배운영기관, 기업소, 단체에 대한 안전관리검열을 하여야 한다.

검열에서 합격한 배운영기관, 기업소, 단체에는 안전관리리행증서를, 배에는 안전관리 증서를 발급하여 주어야 한다.

안전관리리행증서와 안전관리증서는 5년, 잠정안전관리리행증서는 1년, 잠정안전관리 증서는 6개월간 효력을 가진다.

#### 제57조(년차 또는 중간검열)

해사감독기관은 안전관리리행증서 또는 안전관리증서를 발급받은 배와 배운영기관, 기업소, 단체에 대하여 년차검열과 중간검열을 하고 증서의 효력을 확인하여 주어야 한다.

해난사고 같은것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추가검열을 할수 있다.

#### 제58조(다른 나라 배와 배운영기관의 안전관리검열)

해사감독기관은 다른 나라 해사기관의 신청에 따라 다른 나라 배와 배운영기관에 대한 안전관리검열을 하고 해당 증서를 발급하여 줄수 있다.

#### 제59조(안전보장검열의 신청)

안전보장검열을 받으려는 배운영기관, 기업소, 단체와 항운영기관은 해사감독기관에 검열신청서를 내야 한다.

검열신청서는 배에 대한 검열신청과 항시설에 대한 검열신청으로 나누어 내야 한다.

#### 제60조(안전보장일군 배치정형의 검열)

해사감독기관은 배와 항운영기관의 안전보장일군 배치정형을 검열하고 해당 일군에게 배 및 항시설안전보장일군 훈련증서를 발급하여 주어야 한다.

#### 제61조(안전보장계획의 검열)

해사감독기관은 배와 항운영기관이 배, 항시설에 대한 안전보장평가를 하고 평가서와 안전보장계획서를 작성하였는가를 검열하여야 한다.

안전보장평가서와 안전보장계획서는 해사감독기관이 검토하고 승인한다.

#### 제62조(안전보장기록부의 검열)

해사감독기관은 배와 항운영기관이 안전보장기록부에 안전보장계획서의 리행정형을 정상적으로 기록하였는가를 검열하여야 한다.

안전보장기록부는 정한 기간까지 배에 보관한다.

#### 제63조(안전보장설비의 검열)

해사감독기관은 배와 항시설에 안전보장설비를 갖춘 정형과 가동정형, 보수정비정형, 비상시의 사용준비정형을 검열하여야 한다.

#### 제64조(안전보장증서의 발급)

배와 항시설의 안전보장정형에 대하여 검열한 해사감독기관은 배와 항운영기관에 안전보장증서 또는 잠정안전보장증서를 발급하여 주어야 한다.

안전보장증서는 5년, 잠정안전보장증서는 6개월간 효력을 가진다.

#### 제65조(다른 나라 배의 안전보장검열)

해사감독기관은 입항하려는 다른 나라 배의 안전보장정형을 검열하고 국제안전 보장기준에 이르지 못한 배의 입항을 거절할수 있다.

다른 나라 배로부터 안전보장과 관련한 경보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해당한 조치를 취하며 배가 소속한 나라와 국제해사기구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8장 다른 나라 배의 검열

#### 제66조(다른 나라 배검열의 기본요구)

다른 나라 배의 검열을 강화하는것은 해상안전과 해양생태환경보호를 위한 근본 조건이다.

해사감독기관은 다른 나라 배검열체계를 바로세우고 통제를 강화하여야 한다.

#### 제67조(다른 나라 배의 검열기준)

해사감독기관은 우리 나라 령해에 들어 오는 다른 나라 배에 대하여

공화국의 해사법규와 국제해사협약의 준수정형을 검열하여야 한다.

#### 제68조(어찌할수 없는 사유로 들어 온 다른 나라 배의 조사)

어찌할수 없는 사유로 우리 나라 령해에 들어 온 다른 나라 배에 대하여서는 그 사유를 확인하고 요구에 따라 항해감당력상태를 조사할수 있다. 그러나 국제해사협약이 적용되지 않는 배에 대하여서는 공화국 해사법규에 따라 조사한다.

#### 제69조(선급검사 또는 도크상가검사)

해사감독기관은 다른 나라 배를 검열하는 과정에 배의 기술상태가 불량하거나 항해감당 력에 의심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선급검사, 도크상가검사 또는 수리를 요구할수 있다.

#### 제70조(다른 나라 배검열결과의 처리)

해사감독기관은 다른 나라 배의 검열과정에 제기된 문제를 국제해사기구와 지역외국 배검열기구, 배가 속한 나라에 통보하고 해당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 제9장 배에 의한 바다환경오염의 통제

#### 제71조(바다환경오염통제의 기본요구)

배와 해상시설물에 의하여 바다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통제하는 것은 해양생태환경을 보존하여 사람들의 건강과 바다자원을 보호하는데서 나서는 필수적요구이다.

해사감독기관은 배와 해상시설물의 운영과정에 바다환경이 오염되지 않도록 통제하여야 한다.

#### 제72조 (환경오염물질배출의 검열)

해사감독기관은 배와 해상시설물에서 기름, 유독성물질, 버림물 같은것을 배출하지 않는가를 검열하여야 한다.

환경오염물질의 배출기준과 배출방법을 정하는 사업은 해사감독기관이 한다. 이 경우 내각의 승인을 받는다.

#### 제73조(배의 구조, 복원성의 검열)

해사감독기관은 배를 환경오염을 막을수 있는 구조, 복원성의 요구대로 건조하였는가를 검열하여야 한다.

유조선의 현측과 선저는 파손에 의한 기름오염을 최대한으로 줄일수 있도록 2중선체구조를 가져야 한다.

4,000t이상의 기름을 수송하는 배는 분리된 발라스트탱크를 가져야 한다.

**제74조(기름의 적재제한)**

해사감독기관은 배의 선수탱크와 충돌격벽의 앞쪽에 있는 탱크에는 기름을 적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따로 정한 배의 해당 탱크에는 기름을 적재할수 있다.

**제75조(발라스트물 관리기준)**

해사감독기관은 배가 발라스트물을 교체기준, 작업기준, 처리기술에 따라 정해진 구역에서 교체하였는가를 검열하여야 한다.

발라스트물의 관리기준을 정하는 사업은 해사감독기관이 한다.

**제76조(유해도료의 사용금지)**

해사감독기관은 해양생태환경을 파괴하는 유해도료 같은 생물살상제를 배의 칠감으로 사용하지 않았는가를 검열하여야 한다.

유해도료를 배의 칠감으로 사용할수 없다.

**제77조(저장된 오염물질의 처리)**

해사감독기관은 입항하는 배의 기름찌끼, 버림물, 유독성물질을 해당 기관에 정확히 넘겼는가를 검열하여야 한다.

**제78조(작업기록부의 검열)**

해사감독기관은 배의 오염물질작업기록부에 작업정형을 정확히 기록하였는가를 검열 하여야 한다.

오염물질작업기록부는 선장이 수표하여 정한 기간까지 배에 보관한다.

**제79조(기름오염방지비상계획서의 검열)**

해사감독기관은 배의 기름오염방지비상계획서를 검열하여야 한다.

기름수송배와 총톤수 400이상의 배에는 기름오염방지비상계획서가 있어야 한다.

**제80조 (국제오염방지증서의 검열)**

해사감독기관은 배에 국제오염방지증서가 있는가를 검열하여야 한다. 위험화물을 산적하여 수송하는 배의 적합성증서도 검열하여야 한다.

**제81조 (민사책임증서의 발급)**

해사감독기관은 2 000t이상의 기름 또는 연유를 산적하여 수송하는 배에 기름오염 피해보상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르는 민사책임증서를 발급하여 주어야 한다.

## 제10장 해사감독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 제82조 (해사감독사업에 대한 지도통제의 기본요구)

해사감독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는 국가의 해사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기본담보이다.

국가는 해사감독사업체계를 바로세우고 해사감독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를 강화하도록 한다.

### 제83조 (해사감독사업에 대한 지도)

해사감독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중앙해사감독기관이 한다.

중앙해사감독기관은 해사감독사업정형을 정상적으로 장악지도하여야 한다.

### 제84조 (해사정책집행을 위한 문제토의)

중앙해사감독기관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와 국가의 해사정책집행에서 제기되는 중요한 문제를 제때에 토의하고 해당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 제85조 (해사감독기관의 임무)

해사감독기관은 해사부문의 법규와 국제협약, 자료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에 제때에 알려 주며 그 집행을 감독하여야 한다.

### 제86조 (배사고방지대책월간)

국가는 배의 사고를 미리 막기 위하여 배사고방지대책월간을 정한다. 배사고방지대책월간을 정하는 사업은 내각이 한다.

### 제87조 (해사감독조건의 보장)

해사감독기관은 해사감독에 필요한 전문일군과 문건, 자료, 설비 같은것을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와 국민에게 요구할수 있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국민은 해사감독기관의 요구에 제때에 응하여야 한다.

### 제88조 (해사감독사업에 대한 감독통제)

해사감독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중앙해사감독기관과 해당 감독통제 기관이 한다.

중앙해사감독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국가의 해사감독정책집행 형태를 정상적으로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 제89조(항해중지 또는 벌금)

검사, 검열을 받지 않았거나 해당하는 증서를 발급 받지 않았거나 증서유효기간이 지났거나 사고를 일으킬수 있는 배는 항해를 중지시키거나 벌금을 물린다.

#### 제90조(증서의 회수)

위조하였거나 비법적으로 발급한 선원증, 배기술자격증 같은 증서는 회수한다.

#### 제91조(손해보상, 억류, 몰수, 기술자격정지, 강급, 박탈, 선원등록 취소)

해난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정상에 따라 배를 억류, 몰수하거나 원상복구시키며 해당 선원의 배기술자격을 낮추거나 박탈하고 선원등록을 취소한다.

#### 제92조(다른 나라 배에 대한 제재)

해사법규를 어긴 다른 나라 배는 항해를 중지시키거나 억류하거나 벌금을 물린다.

#### 제93조(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

이 법을 어겨 해사사업에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 책임을 지운다.